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5. 10. 28.(화) 〕  
〔 제333회 임시회 〕

---

# 심사결과보고서

---



완도군의회

# 행정자치위원회



##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29. 김양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 2조)
-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안 제5조, 안 제6조)
- 협력체계 등(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3480호】

##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및 자매결연대상, 제의, 사전교류, 의회의 동의, 체결, 지원, 사후관리, 취소(안 제4조~ 안 제12조)
- 명예군민증 수여, 국내외 도시 실질적 교류 추진(안 제13조~ 안 제14조)
- 공유사업, 인력양성, 해외근무,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안 제15조~안 제19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완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의회의 동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10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명예군민증 수여) 군수는 군의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해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빈,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군수는 양 도시 군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군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군수는 군 우수정책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
2.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3.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4.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군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군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군 산하기관 및 공사·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
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3. 자매우호도시,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②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과 국내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의안번호 제3481호】

##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일부 기준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요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에 관한 사항
- 목적, 허가기준(안 제1조, 안 제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의 제 1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제2조제1항관련)

관련 조문	허가 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나)의 세부기준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및 별표 4 제2호다목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을 따른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의 세부기준  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80% 이하일 것. 다만,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제2조제2항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p>「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제1호, 같은 영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비고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 가목</p>	<p>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6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li> <li>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li> <li>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li> <li>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li> </ol>

【의안번호 제3482호】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을 상향하여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 제고하고 지급금액 표기를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월 100,000원→월 120,000원  
(안 제9조제1호)
-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 월 100,000원→월 120,000원  
(안 제 9조제3호)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자녀수당: 월 100,000원→월 120,000원  
(안 제9조제4호)
- 명예특별위로금 금액 표기변경: 각 10만원→각 100,000원  
(안 제9조제5호)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상향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급금액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100,000원”을 각각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0만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수당 등 지급)</p> <p>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보 훈수당 월 <u>100,000원</u> 지급</p> <p>2. (생   략)</p> <p>3.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별한 배 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u>100,000</u> <u>원</u> 지급</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 1항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 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 월 <u>100,000원</u> 지급</p> <p>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별한 배 우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명예특별위로금 연 2 회(설, 추석) 각 <u>10만원</u> 지급</p>	<p>제9조(수당 등 지급)</p> <p>1. ----- ----- <u>120,000원</u>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120,000원</u> ----</p> <p>4. ----- ----- ----- ----- <u>120,000원</u> --</p> <p>5. ----- ----- ----- ----- <u>100,000원</u> --</p>

【의안번호 제3483호】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미닉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지급 금액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12만원→월 120,000원(안 제4조제1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월50만원→500,000원(안 제4조제2호)
- 사별한 배우자 유족수당: 월10만원→월 120,000원(안 제4조제3호)
- 사별한 배우자 명예위로금: 각10만원→각100,000원(안 제4조제4호)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지급 금액의 표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2만원”을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만원”을 “5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0만원”을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만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p>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u>12만원</u> 지급</p> <p>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u>50만원</u> 지급</p> <p>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u>10만원</u> 지급</p> <p>4. 참전유공자와 사별한 배우자에게 명예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u>10만원</u> 지급</p> <p>5.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p> <p>-----</p> <p>-----</p> <p>-----</p> <p>1. -----</p> <p>----- <u>120,000원</u> -----</p> <p>2. -----</p> <p>----- <u>500,000원</u> -----</p> <p>3. -----</p> <p>----- <u>120,000원</u> -----</p> <p>-----</p> <p>4. -----</p> <p>----- <u>100,000원</u> -----</p> <p>5. (현행과 같음)</p>

#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3484호】

##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30.

박성규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안 제4조)
-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5조)
- 환수조치(안 제6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 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의안번호 제3485호】

##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

박재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제4조)
- 독서 문화 진흥사업(안 제5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
6.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
7. 그 밖에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486호】

##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30. 조인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안 제 5조)
-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안 제5조, 안 제6조)
- 처리반의 설치·운영(안 제8조)
- 처리반의 임무(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완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이란 산림과 연결된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재해 위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

도군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업체·  
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접수된 위  
험목의 처리
2. 재해위험목 등 별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목의 처리
3. 재해위험목 별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  
련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①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전, 담, 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제6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문중·기타 단체는 회의록(참석자 날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

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위험목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료,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재해위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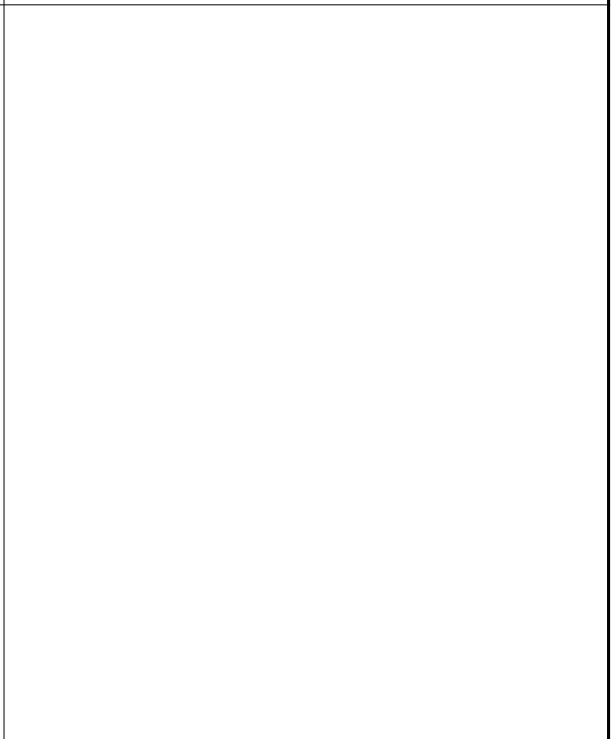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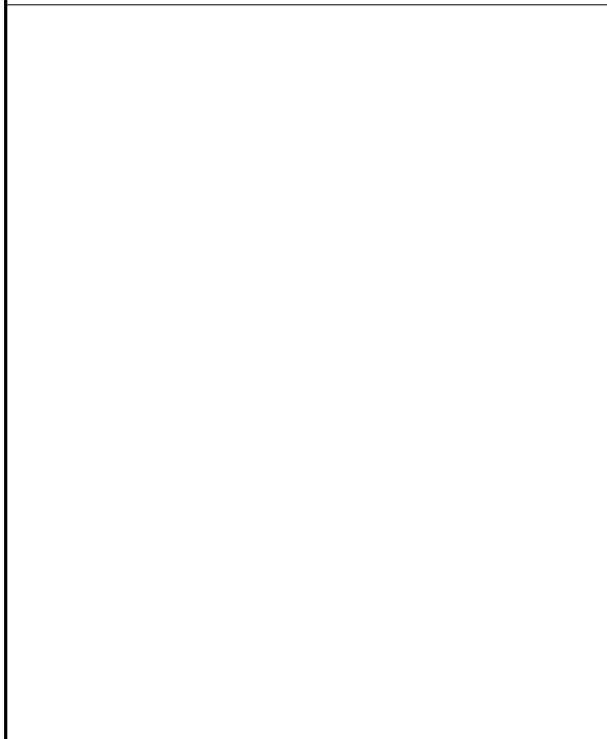
# 현황 사진

○ 위치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 생활권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동의서

재해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 수목제거에 동의합니다.

1. 수목제거에 따른 민·형사 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2.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처리한다.
3.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있다.

20 . . .

◇ 수목(토지)소유자

수목소재번지 주소 : \_\_\_\_\_

수목(토지)소유자 주소 : \_\_\_\_\_

성명 : \_\_\_\_\_ (서명) (생년월일 : \_\_\_\_\_ )

연락처 : \_\_\_\_\_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주소 : \_\_\_\_\_

동 의 자 주소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생년월일 : \_\_\_\_\_ )

연락처 : \_\_\_\_\_

동의번지 주소 : \_\_\_\_\_

동 의 자 주소 : \_\_\_\_\_

성 명 : \_\_\_\_\_ (서명) (생년월일 : \_\_\_\_\_ )

연락처 : \_\_\_\_\_

완도군수 귀하

【의안번호 제3487호】

##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9. 29.

최정욱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 5조)
- 위탁 등(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488호】

##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안 제 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안 제 3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등 (안 제 4조~제 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

## 접한 토지의 가격

###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전액 감면(영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 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점용료·사용료를 제3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⑤ 군수는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 사용[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m <sup>3</sup>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p>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  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  m<sup>3</sup>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math display="block">\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146^2 \times 60}</math>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m/sec)</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li> <li>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li> <li>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li>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ol>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li> <li>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li> </ol>

	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sup>3</sup> )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 · 사용료의 조정산식(제5조 관련)

점용료 · 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 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 · 사용료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별지 서식]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p>일금</p> <p>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인</p> <p>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p>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p>일금</p> <p>위 년 월 일까지 _____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인</p>		

통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p>일금</p> <p>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 완 도 군 수 세입징수관 인</p>		

영수증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세입징수관 계좌		
<p>일금</p> <p>위와 같이 영수합니다.</p> <p>년 월 일 _____은행</p>		

【의안번호 제3489호】

#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아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전거 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 위탁 사항, 유지·관리 조항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 7조 제목 변경: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등→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 자전거 주차장의 관련 위탁·위임 사항의 근거 규정 정비 (안 제 7조제2항)
-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조항 신설(안 제 7조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자전거주차장 관련 조문의 제목, 위탁사항, 유지·관리 조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을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사람이 관리·운영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을 “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p> <p>① <u>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u></p> <p>② <u>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u>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 또는 소유한 사람이 관리·운영한다.</u></p> <p>② ----- ----- <u>관리·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소재지의 읍·면장이나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u>----- -----.</p> <p>③ <u>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u></p>

【의안번호 제3490호】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특정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20조의 3 제목 변경: 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허가 기준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이전, 증설, 업종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 단서 조항 추가 (안 제 20조의 3)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특정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완도군의 경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3의 제목 “(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을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장 및 고물상”을 “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다.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시설은 이전과 증설 또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3(<u>폐차장, 고물상 허가기준</u>) 영 별표 1의2에 따라 <u>폐차장 및 고물상</u>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p> <p>1. ~ 5. (생략)</p>	<p>제20조의3(<u>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u>) ----- <u>폐차장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u>----- .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존 시설은 이전과 증설 또는 업종 변경하는 경우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제3491호】

##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3.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0. 20.

다. 상정일자 : 2025. 10.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계화 추진 전략에 따라 장보고 글로벌 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 위탁근거: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위탁유형: 사무형 위탁
- 위탁기관: 4년('26. 1. ~ '29. 12. 예정)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무 통한 수탁업체 선정
- 위탁운영내용: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관련 사업과 장한상수상자 협의회와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추진 하고 그 밖에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등
- 운영재원: 군비 100%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민간위탁 (연)예산안 산출내역 1부.

3. 2025년 민간위탁 추진실적 1부. 끝.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3조(선양사업) 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
2. 장보고 대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 행사 개최
3. 장보고 대사 기념관 및 기념물 등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4. 장보고 대사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장보고 대사 관련 자료 수립·조사·연구 사업 등
6. 장보고 대사 관련 홍보 및 출판물 발간

7.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
8.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장보고 대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

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현황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읍·면별 균형분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희망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위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총무과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위탁대상사무 관련 전문가 4명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팀장, 서기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탁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 (연)예산안 산출내역**

구 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비고
<b>합 계</b>		<b>250,000</b>	
<b>인건비</b>		<b>75,665</b>	
<b>기본급</b>		<b>61,858</b>	
관리자(1명)	월 3,000,000원 × 12개월	36,000	
기간제근무(1명)	월 2,154,820원(①+②) × 12개월 × 1인 ① 기본급: 시급 10,320원×8시간×5일×4.35 ② 주휴수당: 시급 10,320원×8시간×1일×4.35	25,858	
<b>제수당</b>		<b>1,548</b>	
시간외근무수당	시급 10,320원 × 1.5 × 연 100시간	1,548	
<b>제비용</b>		<b>12,259</b>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 / 12	5,284	
보험료	(기본급+제수당) × 11%	6,975	
<b>사업비</b>		<b>155,000</b>	
<b>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b>	① 장한상 어워드 공모 및 시상: 35,000천원 ② 장한상 수상자 성공스토리 감상문 공모: 20,000천원 ③ 세계인 장보고 비전캠프: 5,000천원 ④ 한상-모국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화: 15,000천원 ⑤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10,000천원 ⑥ 장보고-최경주배 친선골프대회: 50,000천원 ⑦ 수탁단체 제안사업: 20,000천원	155,000	
<b>운영비</b>		<b>19,335</b>	
<b>일반운영비</b>		<b>18,835</b>	
소모품비	A4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	2,200	
비품 구입비	책상, 사물함 등 비품 구입	2,000	
업무추진비	월 300,000원 × 12개월	3,600	
결산용역비	년 3,000,000원 × 1회	3,000	
홈페이지 관리	년 1,500,000원 × 1회	1,500	
여비교통비	출장 등에 따른 여비 및 교통 지원비용	4,000	
복리후생비	200,000원 × 명절 2회 × 2인	800	
잡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1,735	
<b>공공운영비</b>		<b>500</b>	
사무실 임차비	년 500,000원	500	

▪ 세부 소요예산 내역은 향후 횟수, 수량, 금액 등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 사업개요(2025년)

- 추진단체: (사)장보고글로벌재단
- 지원근거: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사업기간: 2025. 3. 20. ~ 12. 31.
- 사업비: 140백만원(민간위탁)
- 사업내용
  -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관련 사업
    - 장보고한상 어워드 공모 및 시상
    - 장한상수상자협의회를 통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 \*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창업성공스토리 감상문 공모, 한상-모국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 등
  - 장한상수상자협의회와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추진
    - 세계인 장보고 비전캠프 운영 등
  - 그 밖에 장보고글로벌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등

## □ 사업 추진실적

-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국제교류관련 사업
    - 장보고한상 어워드 공모 및 시상: 6개국 6명(9. 28. 시상)
      - \*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현황(2016년~): 총 10회
- | 총 계        |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 | 아메리카 | 오세아니아 |
|------------|-----|------|----|------|-------|
| 23개국 / 55명 | 35명 | 2명   | 5명 | 9명   | 4명    |
- 장한상 수상자 창업성공스토리 감상문 공모: 40명(9. 28. 시상)
  - 장한상수상자 세계대회 개최: '25. 4. 9.~4. 13. / 미국(워싱턴, 뉴욕)
    - \* 완도군 특산품 14건 1,860만\$ 수출협약 체결, 현지 판매계약 2건 2.2만\$
  - 한상-모국기업인 상생 파트너십 대회: '25. 9. 28.

○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 세계인 장보고 비전캠프 운영: 1회(20명)

○ 기타

- 장한상 인적 네트워크 활용 완도 특산품 시식 홍보행사: '25. 3. 13. ~ 3. 16. / 베트남 케이마켓, 라오스 콕콕메가마트 / 3개업체 참여
- 장한상수상자 완도 명예군민 지정: 6명
- 완도고향사랑기부금 기부내역: 1명 5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글로벌 선양사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확대 추진

- 해외 장보고유적 탐방 등 연례반복사업 지양
- 장보고혁신사관학교 등 신규 교육사업 발굴을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고 계승하는 사업 확대 추진

○ 장한상 수상자 네트워크를 통한 완도 농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업체계 구축 필요

- '26 장한상수상자세계대회 2026 pre박람회 수출상담회와 연계 추진